

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11월 2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11월 2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 제101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년12월13일) 상정

· 제101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년12월13일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 강덕면)

개정이유

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정(2002. 1. 26)에 따라 관람료 면제 대상을 조정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관람료 면제 대상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장애인 · 국가유공자, 광주민주유공자로 조정함(안 제12조 제6호)
- 박물관중 짚 · 풀생활사박물관을 삭제하고 유럽자기박물관을 신설 함에 따라 박물관 위치 및 관람료를 조정함(안 별표1 및 별표 2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없음	<input type="radio"/>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67호
의결연월일	2002.12.24 (제101회)

제출년월일 : 2002. 12. 24.
제출자 : 부천시장

제안이유

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정(2002. 1. 26)에 따라 관람료 면제 대상을 조정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

주요골자

- 관람료 면제 대상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장애인·국가유공자, 광주민주유공자로 조정함(안 제12조제6호)
- 박물관중 짚·풀생활사박물관을 삭제하고 유럽자기박물관을 신설 함에 따라 박물관 위치 및 관람료를 조정함
(안 별표 1 및 별표 2)

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장애인 ·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유공자

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박물관의 위치(제3조 관련)

박물관명	위 치	비 고
유럽자기박물관	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	

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박물관 관람료(제10조 관련)

(단위 : 원)

박물관명	구분	개인	단체	비고
유럽자기 박 물 관	어 른	1,500	1,300	○ 단체요금 적용은 20인 이상으로 함 ○ 군인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(의무경찰, 전투 경찰, 경비교도대를 포함 한다)
	중 · 고생 군 인	1,000	700	
	초등학생 (6세 ~ 12세)	700	500	
	노인(65세이상) 장애인 유아(6세미만)	무 료	무 료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		개 정 안						
제12조(관람료의 면제)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			제12조(관람료의 면제) ①-----						
1.~5. (생략) 6.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7. (생략)			1.~5. (현행과 같음) 6. 장애인·국가유공자, 광주민주유공자 7. (현행과 같음)						
[별표 1] 박물관의 위치			[별표 1] 박물관의 위치						
박물관명	위치	비고	박물관명	위치	비고				
짚·풀생활사	원미구 춘의동		유럽자기	부천시 원미구					
박물관	381번지 일원		박 물 관	춘의동 8번지					
[별표 2] 박물관 관람료 (단위 : 원)			[별표 2] 박물관 관람료 (단위 : 원)						
박물관명	구분	개인	단체	비고	박물관명	구분	개인	단체	비고
짚·풀 생활사 박물관	어른	2,000	1,200	1. 단체요금 적용은 20 인이상으로 함(다 만, 유아원, 유치원 의 경우 단체인솔 자가 있는 경우에 는 20인)	유럽자기 박 물 관	어른	1,500	1,300	1. 단체요금 적용은 20인이상으로 함
	중·고생 군인	1,000	600	2. 군인은 하사관 하의 군인(단기사 병, 의무경찰, 전투 경찰, 경비교도대를 포함한다)		중·고생 군인	1,000	700	2. 군인은 하사관 하의 군인(의무 경찰, 전투경찰, 경 비교도대를 포함 한다)
	4세~12세 어린이	500	300	3. 장애인, 노인 (65세이상) 유아(6세미만)		초등학생 (6세~12세)	700	500	3. 장애인, 노인 (65세이상) 유아(6세미만)
	0~3세 어린이 노인(65세 이상)	무료	-	4. 무료(65세이상 경비교도대를 포함한다)		장애인, 노인 (65세이상) 유아(6세미만)	무료	무료	4. 무료(65세이상 경비교도대를 포함한다)